

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
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(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,징수)규정에 따라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우편(등기) 발송하였으나 이사, 주소 불명, 폐문 부재 등 기타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

2019. 11. 1.

양 산 시



1. 공 고 명 : 2019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2.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: 강경* 외 532명(붙임내역 참조)
3. 공시송달기간 : 2019. 11. 1. ~ 2019. 11. 16. (15일간)
4.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양산시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교통과(☎055-392-286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